

조선총독부관보(朝鮮總督府官報) 호외(號外) 1927(昭和 2)년 8월 31일 수요일

○ 고 시(告示)

조선총독부고시(朝鮮總督府告示) 제277(號)

조선국유철도 화물운송규칙(朝鮮國有鐵道貨物運送規則) 중(中) 1927(昭和 2)년 10월 1일부터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927(昭和 2)년 8월 31일

조선총독 임시대리(朝鮮總督臨時代理)

육군대장(陸軍大將) 우가키 가즈시게(宇垣一成)

제4조(條)제1항(項)제1호(號) 중(中) 「동(同)1의 화차(貨車)에 적재(積載)함을 득(得)하는 수량(數量)」의 다음에 「(광궤선[廣軌線]과 협궤선[狹軌線]과 직통[直通]하여 운송[運送]하는 경우는 광궤선[廣軌線]의 화차[貨車] 1차[車]에 적재(積載)함을 득[得]하는 수량[數量])」을, 제25조(條)제2항(項) 중(中) 「8척(尺)5촌(寸)」의 다음에 「(협궤선[狹軌線]에 있어서는 6척[尺]5촌[寸])」을, 「8척(尺)」의 다음에 「(협궤선[狹軌線]에 있어서는 6척[尺])」을, 제26조(條)제1항(項) 본문(本文) 중(中) 「무개화차(無蓋貨車) 2차(車) 이상(以上)을 사용(使用)하고」의 다음에 「광궤선[廣軌線]에 있어서는」을, 제29조(條)제1항(項) 중(中) 「6시간(時間)」의 다음에 「(협궤선[狹軌線]에 있어서는 3시간[時間])」을, 제52조(條)제1항(項)제1호(號) 중(中) 「3천5백근(斤)」의 다음에 「(협궤선[狹軌線] 각[各] 역[驛] 상호간[相互間] 발착[發著]의 것에 있어서는 천 근[千斤])」을, 동(同)제2호(號) 중(中) 「천 근(斤)」의 다음에 「(협궤선[狹軌線] 각[各] 역[驛] 상호간[相互間] 발착[發著]의 것에 있어서는 5백 근[斤])」을, 제53조(條)제2항(項) 중(中) 「소형화차(小型貨車) 사용(使用)의 경우에는」의 다음에 「협궤선발[狹軌線發]의 경우를 제[除]함」을, 제56조(條)제1항(項) 중(中) 「15두(頭)」의 다음에 「(협궤선[狹軌線] 각[各] 역[驛] 상호간[相互間] 발착[發著]의 것에 있어서는 4두[頭])」를, 제60조(條) 중(中) 「12엔(圓)」의 다음에 「(협궤선[狹軌線] 각[各] 역[驛] 상호간[相互間] 발착[發著]의 것에 있어서는 4엔[圓])」을, 제61조(條) 중(中) 「18엔(圓)」의 다음에 「(협궤선[狹軌線] 각[各] 역[驛] 상호간[相互間] 발착[發著]의 것에 있어서는 6엔[圓])」을, 제62조(條)제1항(項) 중(中) 「백70엔(圓)」의 다음에 「(협궤선[狹軌線] 각[各] 역[驛] 상호간[相互間] 발착[發著]에 있어서는 60엔[圓])」을, 제82조(條) 중(中) 「1엔(圓)20전(錢)」의 다음에 「(협궤선[狹軌線] 각[各] 역[驛] 상호간[相互間] 발착[發著]에 있어서는 90전[錢])」을 추가(追加)함.

제32조(條)제1항(項)제1호(號)를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1 철도(鐵道)의 청구(請求)에 의하여 수행원(附添人)을 붙임이 가(可)한 것

가 운송(運送) 도중(途中) 적환(積換)을 요(要)하는 수류(獸類: 급외품[級外品] 제3종 가축[家畜]을 포함함)로서 우리(檻), 새장(籠) 등(等)에 수용(收容)하지 아니한 것

나 급외품(級外品) 제3종(種) 가축(家畜) 중(中) 말[馬]

다 급외품(級外品) 제5종(種) 사체(死體: 학술연구용[學術研究用] 및 죄수[囚人]의 사체[死體]를 제[除]함)

라 급외품(級外品) 제6종(種) 특종고가품(特種高價品)으로 차급(車級)에 의하여 운송(運送)하는 것

제53조(條) 말미(末尾)에 아래[左]의 1항(項)을 추가(追加)함.

협궤선(狹軌線) 각(各) 역(驛) 상호간(相互間)을 발착(發著)하는 차급화물(車扱貨物)의 운입(運賃)은 사용화차(使用貨車)의 표기하중(標記荷重) 톤수(噸數)에 의하여 이것을 계산(計算)함.

제70조(條)의2 광궤선(廣軌線)과 협궤선(狹軌線)과 직통(直通)하여 화물(貨物)의 운송(運送)을 하는 경우는 아래[左]의 비율(比率)에 의하여 적환비(積換費)를 수수(收受)함.

1 차급(車扱: 급외품[級外品] 제2종[種]을 제[除]함)	1톤(噸)까지 마다	20전(錢)
2 차급(車扱) 중(中) 급외품(級外品) 제2종(種)	동(同)	40전(錢)
3 급외품(級外品) 제1종(種)	백 근(斤)까지 마다	40전(錢)
4 급외품(級外品) 제3종(種: 송아지[犢], 면양[緬羊], 산양[山羊], 돼지[豚]를 제[除]함)	1두(頭)마다	20전(錢)
5 급외품(級外品) 제3종(種) 중(中) 송아지[犢], 면양(緬羊), 산양(山羊), 돼지[豚]	동(同)	7 전(錢)
6 급외품(級外品) 제5종(種)	1개(箇)마다	2 엔(圓)

제92조(條)제1호(號)를 아래[左]와 같이 개정(改正)함.

- 1 협궤선(狹軌線) 각(各) 역(驛) 상호간(相互間) 발착(發著) 소화물급화물(小貨物扱貨物)로서 1개(箇)의 길이[長] 8척(尺), 중량(重量) 1톤(噸·ton) 혹은 용적(容積) 백 입방척(立方尺)을 초과(超過)한 것 또는 동(同) 차급화물(車扱貨物)로서 1개(箇)의 길이[長] 30척(尺), 중량(重量) 5톤(噸·ton) 혹은 용적(容積) 4백 입방척(立方尺)을 초과(超過)한 것 및 기타(其他)의 소화물급화물(小貨物扱貨物)로서 1개(箇)의 길이[長] 18척(尺), 중량(重量) 3톤(噸·ton) 혹은 용적(容積) 3백 입방척(立方尺)을 초과(超過)한 것 또는 동(同) 차급화물(車扱貨物)로서 1개(箇)의 길이[長] 68척(尺), 중량(重量) 30톤(噸·ton) 혹은 용적(容積) 천팔백 입방척(立方尺)을 초과(超過)한 것